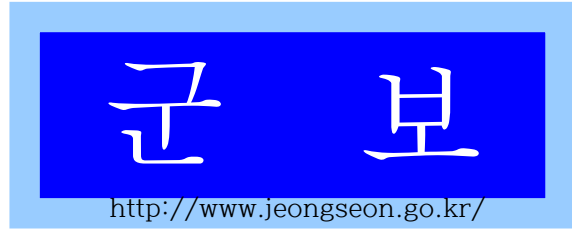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8호 2019. 11. 26. (화)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243호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지형도면 승인고시.....3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1228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5
- 정선군 공고 제2019-1213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완료
공고.....8
- 정선군 공고 제2019-1218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2-16호선, 소로3-9호선)
공사 완료 공고.....9
- 정선군 공고 제2019-1220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2-4호선) 실시계획 공람 ·
공고.....10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13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12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14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2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243호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강원도고시 제2019-436호]로 고시된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정 선 군 수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명 칭: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 위 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 일원
- 면 적: 1,858㎡
- 사업내용: 강원랜드 사회공헌센터 건립
- 사 업 비: 68,479백만원(금회 7,866백만원)

2. 지역개발사업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 목 적: 과거 고한읍사무소 부지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상징성 있게 재건축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사회복지재단이 사용할 업무시설로 ‘사회공헌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시행기간: 2019년도 ~ 2021년도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 대 표 자 : 대표이사 문태곤
- 시행 방식 : 협의 및 수용에 의한 취득 · 사용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게재생략

5. 토지이용계획 계획

구 분	부지면적(㎡)	비 고
합 계	1,858	-
업무시설용지	1,858	단일건축물

6.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 게재생략

7.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5,573	1,858			
고한리	107-1	도로	3,620	85	-	국(국토교통부)	
고한리	124-7	대	50	50	-	정선군	
고한리	125-4	대	1,815	1,703	정선군 사복읍 하이원길 265	주식회사강원랜드	
고한리	125-14	대	88	20	-	정선군	

8.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정선군 경제과에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 : 게재생략(지역개발사업계획,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등)는 강원도 총괄기획과(☎033-249-3032) 및 정선군 경제과(☎ 033-560-2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 선 군 공 고 제2019-1228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 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하천(스므골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정 선 군 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소하천 스므천	소하천 (스므골천) 정비사업	북평면 문곡리 171	북평면 문곡리 249	2.56	2.56	교량 9개소	2019. 12.	2021. 12.	소하천 재해 예방	토지 조서 1식

소하천(스므골천) 정비사업 세부시행계획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소하천(스므골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소하천공사의 목적

-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수해 취약지역에 대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소하천공사의 개요

- 사 업 량 : 호안정비 L=2.56km, 교량9개소 등
- 사 업 비 : 4,000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171번지 일원 ~ 북평면 문곡리 249번지 일원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 행 자 : 정선군수(건설과장)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9. 12. ~ 2021.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불임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 리 자 : 정선군수(건설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정선군 건설과 하천관리부서 비치

10. 예정공정표

- 2019. 12. ~ 2021. 12.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사업비	4,000	372	2,086	1,542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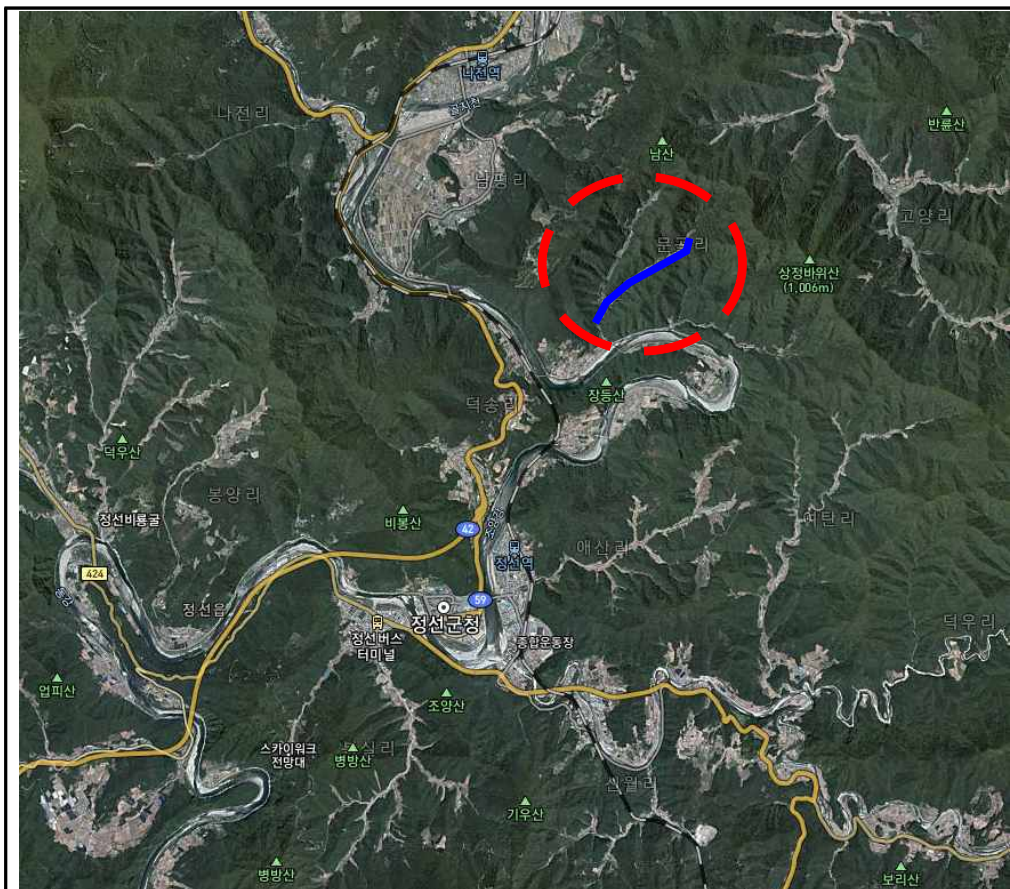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과 하천관리부서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9. 12월부터
- 보상절차 및 방법 : 정선군청 건설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한 내용은 정선군청 건설과 하천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560-2484)



정선군 공고 제2019-1213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완료 공고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정 선 군 수

1. 위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 나. 명칭 :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 사업의 면적 (금회시행)
 - 가. 면적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800m³/일(기존 3,000m³/일), 수처리동 외 641.69m²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명 :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
 - 나.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5. 사업기간
 -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일 : 2019. 10. 25.

정선군 공고 제2019-1218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2-16호선, 소로3-9호선) 공사 완료 공고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2-16호선, 소로3-9호선)의 개설 공사가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정 선 군 수

1. 위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40-1번지 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2-16호선, 소로3-9호선) 사업
 - 나. 명칭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2-16호선, 소로3-9호선) 사업
3. 사업의 면적 (금회시행)
 - 가. 면적 : $A=1,253\text{m}^2$ ($L=180.09\text{m}$ $B=6\sim 8\text{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명 : 정선군수(도시과)
 - 나.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일 : 2019. 5. 07.

정선군 공고 제2019-1220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2-4호선) 실시계획 공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108호(1991. 9. 06.)로 최초 결정된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2-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2일

정 선 군 수

가. 위치 : 정선군 남면 무릉리 624-2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2-4호선) 사업
- 2) 명칭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2-4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09.12.18)	금회시행	
도로	소로 2-4호선	L=220.0m, B=8.0m	L=62.0m, B=8.0m	L=89.6m, B=8.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12.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19. 11. 22.~2019. 12. 06.)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033-560-2456)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불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남면 무릉리	624-20	전	595.0	595	봉양3길21	정선군	-	-	-
2	남면 무릉리	625-1	도	5,050	122	봉양3길21	정선군	-	-	-
3	남면 무릉리	645-10	전	41	41	봉양3길21	정선군	-	-	-
계		3필지		5,686	758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13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정선군의회회장

1. 추진배경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언론의 비판 제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개정 권고 ('19.02.11.)

2. 주요내용

- 제3조(적용범위)
 -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교류, 지자체 장의 요청, 본회의·위원회 의결의 경우 등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 심사위원회의 정수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 위촉
 -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당사자인 경우 해당안건 심사에서 배제
- 제5조(심사기준)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별표)를 마련하여 심사기준 구체화
- 제8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 군의회 개회 중인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공무국외활동 계획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

-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 제9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 의원이 출국 30일전까지 활동계획서 위원회 제출 및 의결을 거친 후 3일 이내 정선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 제10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 의원이 귀국 후 30일 이내 활동보고서 작성
- 60일 이내 본회의 시 결과보고 및 홈페이지 게시

3. 예고기간 : 2019. 11. 22~12. 3(11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 까지 정선군의회의회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기타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활동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선군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전심사에서 배제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3.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4.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활동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선군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활동계획서를 3일 이내에 정선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활동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 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필요성	1. 공무국외활동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활동자의 적합성	1. 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3. 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활동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활동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활동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1. 개 요

활동목적							
활동동기 및 내용							
활동기간	. . . ~ . . . (일간)						
대상국가							
활 동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활 동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활동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활동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활동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활동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0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내외로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0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 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I. (서론부분) : 배경 및 활동세부내용 등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 · 분석내용 등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 · 서명 · 출판사 · 출판년도 · 총면수

0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대상 국가·활동목적·활동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활동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보고서>****○○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공무국외활동 개요**

1. 여 행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0 활동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0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0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관계법령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14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정선군의회의장

1. 폐지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언론의 비판 제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폐지내용 : 조문 전체

- ※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

3. 예고기간 : 2019. 11. 26~12. 13(17일간 / 초일 불산입)

4. 폐지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